

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5
----------	-----

2011년 6월 30일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4월 11일 김용석(서초4) 의원 외 11명
- 나. 회부일자: 2011년 4월 12일
- 다. 상정일자: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1년 6월 3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자: 김용석(서초4)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“기금운용심의회” 명칭을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명시조항 신설
(안 제4조제6항).
 - 신설조문 :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함(안 제4조).
 - “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조례명 띄어쓰기 변경
 - “기금운용심의회”를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명칭 변경
 - “체육진흥담당 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문화관광기획관”으로 변경
 - 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담당과장”을 “시 체육진흥 담당과장”으로 변경
-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(안 제7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동 개정조례안 제4조와 제5조 및 제7조에서 “기금운용심의회”를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심의회가 기금의 조성·관리, 운용 및 결산 등에 대하여 단순한 자문이 아닌 심의,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임.
-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을 신설하여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고 한 것은 기존 조례에 누락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그 기간을 2년, 1회 연임 가능으로 한 것도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과 제4항에서 “체육진흥 담당국장”을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문화관광기획관”으로, 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담당과장”을 “시 체육진흥 담당과장”으로 각각 변경한 것은 서울시의 직제와 조문의 체계에 맞춘 것이므로 타당하다 판단됨.
- 동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“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를 “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로 수정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동 개정조례안에서 “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”로 조례명을 변경한 것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의 법률 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따른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”를
“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-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하고,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.
-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중 “심의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2.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
3.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4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</u> 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② <u>심의회</u>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<u>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하고</u>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④ <u>심의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서울특별시체육진흥 담당 과장이 된다.</u></p> <p>⑤ <u>심의회</u>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>제5조(수당 등) <u>심의회</u>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·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6조(생략)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<u>심의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	<p><u>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4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<u>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</u> 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1. 2. 3. ② <u>심의회</u>는 ③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하고</u>, ④ <u>심의회</u>의 <u>시체육진흥 담당 과장이 된다.</u> ⑤ <u>심의회</u>의 ⑥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수당 등) <u>심의회</u>의</p> <p>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기금의 운용계획)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<u>심의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